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403호, '98. 5.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지도·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하고 정돈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 대상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및 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생활악취시설
2.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특정시설
3.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제3조(지도·점검 대상사업장의 관할)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하 "환경관

리청장"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기관별 관할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광역적인 대기오염 또는 수질오염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관할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확인하거나 환경관리청장으로 하여금 점검·확인하거나 환경관리청장으로 하여금 점검·확인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또는 환경관리청장(이하 "시·도지사 등"이라 한다)은 제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인력, 장비 및 기술요원을 요청하거나 협의에 의하여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 등은 관할사업장외의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의 불법배출(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의 배출을 포함한다) 목적, 환경오염사고발생등 긴급하게 현장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기관에 통보하고 원인규명 및 증거확보 등을 위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할기관의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는 때에는 관련 조사자료를 인계하고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기관에 통보하여

야 한다.

제3조의2(지도·점검시 민간참여) 시·도지사 등은 지속적인 민원유발 사업장, 다수인민원 발생사업장 등에 대한 문제 해결과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도·점검시 민간단체 및 전문가, 관련기관의 공무원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지도·점검의 종류 및 기준)

- ① 지도·점검은 정기지도·점검은 수시지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 정기지도·점검은 사업장의 규모 및 위반횟수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차등 실시한다. 다만,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을 면제할 수 있으며, 청색등급 사업장과 최근 1년간 법령위반이 없었던 녹색등급 사업장중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실태, 오염도 측정기록 등을 토대로 환경관리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횟수를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도·점검 횟수를 경감하더라도 2년간 1회이상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수시 지도·점검은 [별표 3]과 같은 사유발생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오염도 검사 등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되, 야간, 동절기, 갈수기, 연휴기간등 취약시기의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 ④ 시·도지사 등은 폐수처리업 등록이나 폐수위탁자 지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지도·점검 외에 폐수의 적정 위·수탁여부, 보고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되, 지도·점검횟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폐수처리업 등록을 한 사업장 : 반기 1회
- 2.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사업장 : 연 1회

제5조(통합 지도·점검의 실시) 시·도지사 등은 지도·점검 대상사업장이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에 의한 지도·점검대상 중 2개분야 이상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하

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이 시설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커서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 민원·환경오염사고·언론보도 등으로 긴급하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인력운영상 통상지도·점검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지도·점검 대상사업장의 관리)

- ① 시·도지사 등은 관할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장 현황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 별지 제1호 서식
 - 2. 특정시설 : 별지 제3호 서식
- ② 시·도지사 등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적색사업장 또는 중점관리사업장중 자주 민원을 유발하거나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의 환경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제조공정, 주사용원료, 공정배치도,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공정, 민원 또는 환경오염사고의 발생특성, 피해에 상지역 등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 등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지도·점검결과를 토대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등급과 중점관리 및 일반사업장을 재분류하고 이를 지도·점검실적과 함께 작성하여 다음해 1월 15일 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점검계획의 수립)

- ① 시·도지사등은 자체실정에 맞게 연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도·점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일반현황(지역특성을 포함한다)
 - 2. 사업장 현황(사업장 분류, 규모별·업종별 연료 및 용

수사용량, 민원발생 건수 및 사안별 분류 등을 포함한다)

3. 환경오염사고 발생현황(사고유형 및 원인별 분류, 주요 사고발생업체 명단 등을 포함한다)
4. 전년도 주요 추진실적 평가(지도·점검, 기술지원, 직원등에 대한 교육, 장비구입, 기타 오염저감 추진실적 등을 포함한다)
5. 당해연도 지도·점검 추진계획(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명시하고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계획 등을 포함한다)
6. 무허가(미신고) 시설 색출 및 근절대책

제8조(지도·점검 공무원의 교육) 시·도지사 등은 지도·점검 공무원의 자질과 기술향상을 위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특성, 시료채취 장비 운영·유지 및 관리, 시료채취방법 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반기 1회이상 자체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지도·점검시 점검요령, 기밀의 누설방지, 특정업체의 비호·유착으로 인한 부조리 발생의 예방 등을 위한 정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점검방법 및 요령)

- ① 지도·점검업무 수행은 2명(직접관능법에 의한 악취 측정은 5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지도·점검 공무원이 지도·점검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점검목적, 점검사항 등을 밝히고, 지도·점검자의 신분을 명시한 증표(공무원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점검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도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지도·점검 공무원은 당해 사업장 관계인의 입회하에 사업장 현황카드를 참조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오염물질의 시료를 채취하거나 이를 측정하고, 시료채취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④ 지도·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확인서를 징구하되, 6하원칙에 의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⑤ 지도·점검 공무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한 지도·점검표를 작성하거나 시료채취확인서 및 위반확인서를 징구할 경우 각 서류의 하단에 점검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복사 또는 먹지를 사용한 사본을 사업자에게 현장에서 교부하여야 하며, 현장에서의 사본교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⑥ 시료채취확인서 및 위반확인서에는 발급번호를 부여하고 기관장의 실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본부 및 특별시·광역시·도 본청의 경우에는 책임부서 실·국장의 실인을 날인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 등은 시료채취 확인서 및 위반확인서의 발급 현황, 분실 및 파기현황 등을 확인서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확인서를 분실하였거나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부서장의 내부결제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지도·점검사항)

① 시·도지사 등은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되, 연 1회이상(제4조제2항의 단서조항에 의한 4종·5종 사업장의 경우에는 2년간 1회이상, 적색사업장의 경우에는 연 2회이상)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정밀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실태
3. 자가측정 실시상황(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한정,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 부착·운영관리 실태 포함)
4. 환경관리인 임명여부
5. 행정명령 이행여부
6. 배출허용기준 준수확인을 위한 오염도 검사(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된 배출구의 자동측정 대상 항목의 검사는 생략 가능)
7. 기타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 사항 중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사업장(환경부고시, “굴뚝배출가스자

동축정기기 등의 부착대상사업장·측정항목 및 부착시기”의 [별표 2]에 해당되는 사업장) 중 부착시기 도래 이후에도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거 자료분석 등을 통하여 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기의 부착기피 및 부적정운영을 근절하여야 한다.

③ 악취를 배출하는 대기오염물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및 생활악취시설(이하 “악취배출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도·점검표를 활용하여 악취배출시설 및 방·탈취시설의 운영·관리상태를 점검하되, 당해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악취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1. 굴뚝 등 배출구에서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배출구에서 공기희석관능법을 이용하여 악취를 측정한다.
2. 사업장에서 배출된 악취가 지표부근에서도 감지되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에서 공기희석관능법, 직접관능법 또는 기기분석법으로 악취를 측정한다.(다만, 기기분석법은 가급적 악취원인 및 발생원 규명 등에 활용)

④ 특정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는 지도·점검표를 활용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특정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2. 오염물질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실태
3. 조치사항 등 행정명령 이행여부
4. 기타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

⑤ 시·도지사 등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이하 “무허가사업장”이라 한다)의 색출 및 근절을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고 매년 2회 이상 무허가사업장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공단입주업체 명단(공단관리사무소)
2. 보일러 설치신고사항(에너지관리공단)
3. 공장준공검사대장(시·군·구 건축관계부서)

4. 공장등록현황(시·군·구 공장등록 부서)

5. 사업자 등록현황(세무서)

6. 기타 배출시설 설치와 관련한 사항등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허가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배출예상 오염물질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지도·점검결과 법령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관계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시·도지사 등은 배출시설의 운영·관리 소홀 등에 의한 화재, 폭발, 오염물질 누출등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대책반을 편성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점검결과에 일한 행정처분 등)

① 시·도지사 등은 지도·점검 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해서는 검사기관에 검사의뢰(지시)하고,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검사의뢰(지시)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분석대상시료에 대하여는 특정 사업장을 확인할 수 없도록 번호를 부여하여 의뢰(지시)하는 등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등은 관할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한 날 또는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점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배출부과금 부과등 경제적인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처분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등은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의 배출허용기준 초과(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로부터 전송된 30분 측정치의 평균값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등은 지도·점검 결과는 지도·점검 기록부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결과는 행정처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등은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이내로 판정된 경우에도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시 참고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2조(행정처분의 사후관리 등)

① 시·도지사 등은 사업자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오염도 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 이하이거나 제출한 내용보다 과도하게 낮게 나타난 경우에도 개선기간 중에 주기적으로 오염도를 검사하여 개선계획서 제출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술지원) 시·도지사 등은 영세기업등 기술력이 미약한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전문기관 또는 민간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공정개선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보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원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일일업무일지의 작성)

① 지도·점검 공무원은 개인별로 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조치사항등 일일지도·점검 결과를 일일업무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일일업무일지는 당해 공무원이 보직변경 등의 사유로 지도·점검 업무를 종료는 날부터 1년간 전 소속부서장이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위임업무에 대한 보고)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 및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업무에 대한 기타보고는 일정서식에 의한다.

제16조(전산입력에 의한 서식의 작성 및 보고) 이 규정에 따라 기록되어 보관되거나 보고되는 서식 중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 서식에 대해서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지침의 폐지) 이 훈령은 시행과 함께 환경단속실명

제추진지침(대관 67221-853호, '99.9.21)은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해서는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사업장·측정항목 및 부착시기(환경부고시 제1999-91호, '99.6.15)”의 규정에 의해 부착시기가 도래된 이후부터 적용하며, 동 고시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고시에 의한 부착시기가 경과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사업장 관할구분

관할기관	관할 사업장 범위
환경관리청장 및 지방환경관리청장	1. 사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사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의 사업장 2.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유지역안의 사업장 3.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중 부산광역시 북구의 전용공업지역 및 대구광역시 북구, 달서구, 북구의 일반공업지역안의 사업장
시·도지사	상기 지역외의 사업장

비고: 소음·진동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관할사업장 범위에 관계없이 시·도지사가 지도·점검을 담당한다.

[별표 2] 정기 지도·점검대상사업장의 구분 및 점검횟수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가. 등급결정기준

등급	최근 2년내 지도·점검결과
청색	-위반이 없었던 정상가동 사업장
녹색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 중 휴업등 정상가동 이외의 사항으로 지도·점검이 불가능했던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2회 이하 위반한 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을 1회 초과한 사업장
적색	-3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2회 이상 초과한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제1호·제2호·제5호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운영으로 1회이상 적발된 사업장

비고: 1. 신규허가신고사업장의 등급은 녹색등급으로 구분한다.
2. 사업장 등급은 과거 2년간의 위반횟수를 산출하여 1년마다 재조정한다.
3. 녹색·적색사업장은 위의 각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선정한다.

나. 대기 정기지도·점검 횟수

(단위: 회/년)

등급	사업장 규모별 점검횟수				
	1종	2종	3종	4종	5종
청색	2	1	1	1	1
녹색	3	2	2	1	1
적색	4	4	3	3	3

비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3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내의 적색사업장,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점검횟수를 1회이상 추가한다.

2. 폐수배출시설설치 사업장

가. 등급결정기준

등급	최근 2년 이내 지도·점검결과
청색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정상가동)
녹색	-청색 및 적색등급을 제외한 사업장
적색	-오염물질 부적정 처리 및 행정명령 불이행 등 : 1회이상 위반사업장 ○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29조 제1·2·4·호 위반 ○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 명령·폐쇄명령 불이행 ○ 수질오염사고 발생 -배출허용기준 초과 : 2회이상 위반 사업장 -전체위반 횟수 : 3회이상 위반 사업장 -기타 민원유발 등 관할기관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비고 : 1. 신규허가(신고)사업장의 등급은 녹색등급으로 분류한다.
 2. 특별대책지역,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km(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취수시설로부터 15km) 이내 지역안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위반횟수를 1회씩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3. 사업장 등급은 과거 2년간의 위반횟수를 산출하여 1년마다 재조정한다.

나. 지도·점검기준

(단위 : 회/년)

등급	사업장 규모별 점검횟수				
	1종	2종	3종	4종	5종
청색	2	1	1	1	1
녹색	3	2	2	1	1
적색	4	4	3	3	3

- 비고 : 1. 시·도지사 등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으로서 해당 처리시설에서 위치한 청색등급의 사업장에서 일반오염물질만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2년간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자율적으로 점검횟수를 정할 수 있다.
 2. 시·도지사 등은 녹색등급 이상의 사업장으로서 상수원과 관원이 없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일반오염물질만 배출하는 사업장 및 유기용제 또는 유독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도·점검 횟수를 하향 조정(최소 1회이상은 점검)할 수 있다.
 3. 특별대책지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km(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취수시설로부터 15km) 이내의 지역안의 사업자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및 유기용제 또는 유독물질 사용사업장에 대하여는 점검 횟수를 1회이상 추가한다.

3.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사업장 등급결정기준 및

지도점검 횟수

등급	기준(최근 2년 이내 지도·점검결과)	지도·점검 횟수
청색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정상가동)	-연 1회 이상
녹색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정상가동)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 중 휴업등 정상가동 이외의 사항으로 지도·점검이 불가능했던 사업장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을 2회이상 초과한 사업장	-연 2회 이상
적색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을 3회이상 초과한 사업장	-연 3회 이상

- 비고 : 1. 신규허가(신고)사업장의 등급은 녹색등급으로 구분한다.
 2. 사업장 등급은 과거 2년간 위반횟수를 산출하여 1년마다 재조정한다.

4. 악취배출사업장

가. 등급결정기준

등급기준	대 상 사 업 장
중점관리 사업장	-지도·점검결과 최근 2년간 2회이상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최근 2년간 3회(집단민원은 1회)이상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 -주책가에 위치하여 악취오염물질을 다량 또는 고농도로 배출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중에서 생산공정 및 방지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악취오염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
일반관리 사업장	-중점관리사업장 외의 사업장

나. 지도·점검횟수

등급기준	대 상 사 업 장
중점관리 사업장	-연3회이상 실시(악취발생 우려가 높은 하절기 및 하절기 악취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봄철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일반관리 사업장	-연1회이상 실시(악취발생 우려가 높은 하절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비고 : 악취배출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생활악취시설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거의 없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황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5. 특정시설(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40조)

가. 등급결정기준

등급기준	대 상 사 업 장
중점관리 사업장	-최근2년간 2회이상 위반한 사업장 -최근2년간 3회이상 민원(집단민원은 1회이상)이 발생한 사업장 -상수원에 직접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입지한 사업장
일반관리 사업장	-중점관리사업장외의 사업장

나. 지도·점검기준

구분	지도·점검기준
중점관리 사업장	반기 1회이상
일반관리 사업장	연 1회이상

- 비고 : 특정시설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별표 외 수시 지도·점검 기준(제4조 관련)]

1. 오염피해 지정 등의 민원이 있는 경우
2. 타기관으로부터 지도·점검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사업자가 허가(변경허가)·신고(변경신고) 등에 따라 배출 시설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 오염도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개선명령·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4.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지도·점검 결과 생산공정

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

5. 폐수배출사업장중 폐수수탁처리업 등록을 한 사업장, 유기오제등 수질오염유발물질 다량사용 사업장, 상수원 취수시설 상류에 위치한 3종(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는 4종)이상 사업장(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으로서 당해시설에서 처리하는 물질만 배출하는 사업장과 최근 2년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제외)

6. 기타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의 측정자료 이상, 지역오염도의 심화 등 시·도지사 등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1)]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 경미 지도-점검표									
I. 업체 현황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년월일		허가(신고)기관						
업체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환경관리인	자격		자격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지역구분						
업종	년월일	종별	생산품						
	시설명		용량	대수					
배출시설허가(신고)사항	총배출시설수		총배출구수		시료채취배출구				
	사용연료	최대사용량(일)	주용도	방지시설명	용량	설치위치 및 대수			
사용연료 및 방지시설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II. 점검사항 및 결과

구분	점검사항	주요확인사항	점검결과
1. 배출시설 허가·신고사항	배출시설 허가·신고	- 배출시설 허가(변경허가·신고)변경신고증 확인	
	입의 증·신설 여부	- 허가(신고) 내용과 실제 시설설치 사항 확인	비
2. 배출시설 운영	제조공정 확인	-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서류등에 의한 공정	

영관리	제조공정 확인	- 흐름도, 원료사용량 등 제조공정 - 단위시설의 Vent, Safety Valve 등 관리상태	
	정상운영 여부	- 부식, 마모 등에 의한 오염물질 누출여부 -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는 오염물질배출장치 - 공기조절장치(덤펀), 가압배출판(버퍼)스닥트의 설치여부 - 가동중지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인인, 기간 등)	
3. 방지시설	보일러, 기타사항	- 점화용 보조연료(가스, 경유 등) 사용여부 - 지역연료사용기준 준수여부(저황유 사용여부) - 연소물(연료 등)의 종류 및 적정량 투입 확인 - 고체연료사용승인 확인 - 악취발생물질 무단소각 여부	
	설치여부	- 방지시설 설치여부 확인(방지시설 면제대상 제외) - 허가(신고)시 설계된 도면(규모, 용량, 위치 등)과 일치여부 확인	
오염물질 배출상태	정상운영 여부	- 방지시설 가동여부 확인(역산전력계 등) - 부대기계, 기구류(제방기, 각종모터 등)의 제성능 발휘여부 확인 -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배출량과 방지시설 처리능력 비교 확인 - 방지시설의 임의교체여부 확인 - 약품의 적정량 투입 및 소모품의 정기교체(여과물 교체 등) 확인 - 주기적 점검 실시여부 확인 - 가동 및 고장수리에 관한 방지시설운영 일지 등 관계서류 확인 - 공동방지시설에 허가 배출시설이외의 시설이 연결되었는지 확인 - 직산전력계 설치확인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간과 직산전력계의 가동시간 비교확인	
	배출상태	- 1차 육안으로 매연 및 먼지 배출상태확인 - 측정공의 위치 및 측정대 적정설치여부 확인 - 2차 시료채취 및 오염도검사 - 배출되는 오염물질 주요항목 측정 - 총배출구수/시료채취배출구 기재	
4. 자가측정 상태	자가측정 이행여부	- 자가측정 실시여부(배출구별 이행횟수 등) - 자가측정기록 보관여부(6개월) - 특정유해물질 배출여부 및 측정여부확인	
	자가측정 정도관리(해당사업장에 한함)	- 측정장비 확보 여부 - 표준가스등을 이용한 측정오차관리실태 확인 - 시약 사용실적과 측정횟수등의 비교여부 확인 -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측정여부 확인 - 측정장비의 공공기관 성능검사 실시여부 확인	
	측정결과 활용	- 오염도 기준초과 및 비정상 변화분석에 따른 조치여부 확인	
4-2.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기 부착·운영 관리상태	부착여부	- 부착시기 이전에 부착, 관제센터에 전송여부	
미부착 사유의 타당성 여부		-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는지 여부 -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기준 이내로 항상 배출되는지 여부 - 신규시설로 1년간 설치유보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 굴뚝구조상 부착이 불가능한 시설인지 여부(승인여부 확인) - 연간가동일수가 30일미만인 예비시설	

	인지 여부(승인여부 확인)	
운영·관리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표시가 계속되고 있는지 여부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된 측정기기를 7일 이상 방치했는지 여부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측정하는 경우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의 표준값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부적절한 교정 가스 또는 교정액을 사용했는지 여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부합되는지 여부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관리를 받았는지 여부 -굴뚝자동관제센터에 측정자료를 전송하는지 여부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동명령의 위반 여부	

비고 :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의 운영상태와 관련해서는 해당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시에만 별도로 추가하여 사용할 것

5. 환경관리인 근무상태	정상근무 확인	-종별 자격기준 확인 -환경관계분야 전담부서 근무여부(인사기록, 출근부, 급료지급 등 관계 서류 확인)
6. 신고 및 행정처분	신고 및 행정처분 이행상태	-각종 신고사항 이행여부 확인 -행정처분의 이행상태 확인(경고,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조업정지, 폐쇄명령, 허가취소 등) -각종 지시사항 이행여부 확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III. 특기사항

IV. 점검자의견

V. 첨부

				년 월 일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직책	성명	(인)	(유관발송일:)	

II. 점검사항 및 결과

구분	점검사항	주요확인사항	점검결과
1.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유무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유무	-허가(신고)증 확인	
	무허가(미신고)시설 설치 조업 유무(인의증설, 신설)	-허가내용과 실제 설치시설의 확인 비교	
	가동개시 신고여부	-가동개시후의 조업여부	
2. 방지시설(예수처리시설 운영현황)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점검시만 가동여부)	-현장확인 -약품소모량, 전력사용량 및 기타 관계장부 등 비교검토	
	비밀배출구 설치여부	-현장확인 -용수사용량과 폐수배출량 비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계도면 검토	
	방지시설 고장방지(기기고장 등)여부	-현장확인 -운영기록부 확인	
	처리약품의 정상적 투입여부	-현장확인 -표준계산서에 의한 약품구입량, 재고량, 분당 투입량 및 소모량 비교 검토(허위기록여부확인)	

	방지시설의 과부하 운영여부	-총폐수배출량, 처리장 처리설비용량 등 비교검토	
	처리방식의 적정여부	-처리상태 확인	
	방지시설 가동 기록유지 여부	-기록부 확인	
	최종방류수 수질상태	-시료채취 및 수질조사시료채취 확인서 장구	
3. 환경관리인 근무상태	관리인 정상근무 확인	-종별구분에 따른 관리인 자격 적정 여부 -채용관계등 인사기록, 출근부, 봉급명세서 등 확인	
4. 행정명령 이행사항	행정처분 이행여부	-근간의 행정처분 관계 서류확인 및 이행여부 확인	
	적산전력계 및 유량계 설치유무	-설치유무, 적정기기 유무 및 정상가동유무 등 확인	
5. 시료채취 상황	검체번호	1	2
	검체의 종류		
	검체채취일시		
	검체채취량		
	비고(인)희재		
III. 특기사항 IV. 점검자의견 V. 첨부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직책	성명	(인) (유관발송일:)

[별지 제7호 서식(2)]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정밀 지도·점검표			
I. 업체 현황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년월일	허가(신고)기관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	자격증 번호	
	직위	최종학력	
사업장	소재지		
	수역	<input type="checkbox"/> 청정 <input type="checkbox"/> 가 <input type="checkbox"/> 나 <input type="checkbox"/> 특례	
	지역구분	<input type="checkbox"/> 주거 <input type="checkbox"/> 상업 <input type="checkbox"/> 녹지 <input type="checkbox"/> 공업 <input type="checkbox"/> 공단 <input type="checkbox"/> 기타()	
배출시설 허가(신고)사항			
방지시설	폐기물발생량		
용수사용량	1일 최대사용량 m^3	폐수발생량	1일 최대사용량 m^3
	1일 평균사용량 m^3		1일 평균사용량 m^3
폐수처리방법	폐수처리능력 ($m^3/일$)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